

	<h1>석좌교수 규정</h1>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4. 7. 1.
		최종개정일자	2018.11.15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 이라 한다) 의 석좌교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석좌교수는 국내·외적으로 학문적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의 저명인사 또는 석좌교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.

제3조(임용) ① 석좌교수는 교무위원회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석좌교수 채용 심사를 위해 총장의 자문기구로서 전형위원회를 두며, 전형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추천된 자를 총장이 임용한다.<개정 2018.11.15>

제4조(구비서류) 석좌교수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특별한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해서 사후에 제출토록하거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이력서
2. 연구실적 목록 및 실적물
3. 경력증명서
4. 최종학위증명서
5. 학문적, 사회적 업적에 관한 개요
6. 주민등록등본
7. 기타 자료

제5조(임용기간) 석좌교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,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8.11.15>

제6조(직무) ① 석좌교수는 교육, 연구 등 학술 활동과 기타 대내외 활동 등을 통하여 대학에 기여하여야 한다.

② 석좌교수는 해당 전공분야의 강의 및 연구를 담당할 수 있다.

제7조(처우)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해임) ① 총장은 석좌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석좌의 권위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
2. 학교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
3. 학술활동 또는 대내외 활동 등을 통한 학교에의 기여가 극히 부진한 자
4. 사망, 능력 쇠퇴 또는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

② 석좌교수로 임용기간이 종료된 후 재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임된 것으로 본다.

제9조(기타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